

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90일
신청인	기업명			설립일	
	대표자	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팩스		전자우편	
	사무소 소재지				
	첨단산업 분야				

「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」 제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2.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3. 교육프로그램 내용 4. 교육 실습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 5. 기업부설 교육훈련기관 또는 기업의 교육훈련부서가 위치한 건물 또는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(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사진 포함)	수수료 없음
업무 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신청서 검토	➔	지정서 발급	➔	공 고
신청인		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		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